

#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2023. 6. 14

행정재경위원회

의안 번호	183
----------	-----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6. 1. 구청장(재무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(2023. 6. 14.)  
“원안가결”

### 2. 제안설명 요지( 행정국장 정찬식 )

가. 제안이유

-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 중 서울지역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 
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  
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내용 변경

「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선  
임방법 및 자격) 제2항 중 “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둔 자 중  
에서”의 문구 삭제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(검사위원의 선임)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○ 기 타

(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(2) 입법예고(2023.3.31. ~ 2023.4.21.) 결과, 의견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부패영향평가 : 특기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작성 제외대상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조성수)

□ 안 제3조(선임방법 및 자격) 제2항 “② 의원 이외의 감사위원은 서울 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.” 중에서 “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둔 자 중에서 다음”까지를 삭제하려는 것임.

□ 그러나, 생각하건대, 본 규정이 경쟁제한(진입제한) 자치법규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며,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임.

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시행령 제83조가 결산감사위원 선임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고,

---

「지방자치법」 시행령 제83조(감사위원의 선임)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감사위원(이하 “감사위원”이라 한다)의 수는 시·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, 3명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(常勤)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.

---

○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지역사회 사정과 현안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주민의 눈높이와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

결산 검사에 임하라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.

- 더욱이 우리 해당 조례 내에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범위를 제3조제2항과 같이 설정하고 있음.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와 행정안전부 등의 관점에서 보는 경쟁제한 대상자는 결산검사위원 6명(제2조, 정수) 중 공인회계사 1명~2명 정도만 해당될 것임.

---

「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3조(선임방법 및 자격)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
②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.

1.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,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

2. 정부투자기관, 금융기관 등에서 회계 또는 재무관리분야에 3년 이상 경험자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

3. 공인 회계사

4. 지방의회의원 경력자 중 결산검사위원으로 경력이 있었던 자

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.

---

- 그러므로, 상급관청들의 권고 또는 검토 요청은 자치권인 자기결정권을 등한시한 지방자치 민감도가 부족한 검토라고 볼 여지가 있음. 이는 결산 검사 전체 구성원 중 회계사가 전체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하지 않음에도 일부의 구성원이 시장경제 구조와 관련이 있다고 하여 해당문구를 삭제 하라는 것은 다소 '비례의 원칙'을 넘어선 요청일 수 있음.

- 또한 결산업무는 서울시나 강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광역 및 기초 243개 지자체가 매년 같은 기간에 실시하고 있어 시장진입 제한 등의 문제를 유발시킬 여지가 크지 않을 것임.

□ 다만, 행정적으로 해당 문구를 삭제한다하여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추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나, 이러한 지방자치의 가치와 의미를 지나치게 중앙의 법 논리로만 보려는 행태는 지방자치 부활 30년의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임.

□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급관청의 권고 또는 요청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, 다소 본 요청이 지방자치 민감도가 부족한 요청일지라도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해 형식적으로나마 수용하는 것이 실무행정을 위해 유익할 수도 있을 것이기에 해당부서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이라 할 것임.

**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**

**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**

**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**

**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**

**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**

붙임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

**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**

# 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6. 1.  
제출자 : 강남구청장  
제출부서 : 재무과

## 1. 제안이유

강남구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 중 서울지역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조례의 내용 변경
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선임방법 및 자격) 제2항 중 “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둔 자 중에서” 문구 삭제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(검사위원의 선임)
  - 검사위원의 수·선임방법·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

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(1) 일부개정조례안, 별첨

(2) 입법예고(2023. 3. 31. ~ 2023. 4. 21.) : 의견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작성 제외대상

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둔 자 중에서 다음”을 “다음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3조(선임방법 및 자격) ① (생략)</p> <p>② 의원 이외의 감사위원은 <u>서울특별시</u>에 거주하거나 <u>근무지</u>를 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3조(선임방법 및 자격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다음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